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9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93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1174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솔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

담당변호사 김새한

변론 종결2021. 11. 10.

판결 선고2021. 12. 15.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11743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11.경 국내 거소를 신고하였고 그 체류기간이 2019. 10. 30.까지인 점,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피고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소도 국내 주소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적어도 수시로 왕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관리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관리해왔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법원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않았는바, 피고는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송달하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144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18, 을5, 을6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5. 15.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제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AF)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받은 후 2020. 9. 8.경 부동산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관리인의 직원이 2020. 9. 9. 피고에게 위 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④ 피고는 2020. 9.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2020. 9. 9.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2020. 9. 9.부터 2주 이내인 2020. 9. 16.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을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3. 27.경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고, 소송계속 중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고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소송을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법인이고, C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은 I 또는 J 명의로 2014. 5. 19.부터 2014. 9. 5.까지 8회에 걸쳐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미화 1,240,534.82달러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후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757,096.04달러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5.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6. 8. 18. 'C은 원고에게 미화 757,096.0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합2296호). C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5. 26.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나2064242호), 위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6. 5. 29. 피고에게 "C은 J의 대표로서 2013. 9. 11. 피고가 대표로 있는 AG유한공사와 미화 586,000달러(644,600,000원, 환율 1,1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 하였으나, 위 의류를 전부 공급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물품대금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C은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일자 2015. 1. 5.,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D,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4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피고의 채무인수로 2018. 4. 2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갑6, 을1, 을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미화 757,096.04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갑3, 갑4-1, 2, 갑6, 갑8-1, 2, 갑9, 갑13, 갑17-1, 2, 을1 내지 을3, 을4-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AD, A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9. 1.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336,000,013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2,423,131,278원이므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강원도 평창군 M 대 1432m 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강원도 평창군 N 도로 398m ² 강원도 평창군 P 임야 16946m ² 강원도 평창군 S 대 1830m ² 강원도 평창군 ○ 전 1653m ² 강원도 평창군 R 임야 51570m ²	399,580,900원
이 사건 부동산	91,319,000원
서울 성동구 D, E에 있는 F건물 L호	435,000,000원
예금(AB은행, AC은행, AD, AE)	410,000,000원
합 계	100,113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	가액
AI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36,000,013원
주식회사 AD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205,166원
주식회사 AE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2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41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848,326,112원1) = 757,096.04달러 × 1120.5원(2017. 9. 1.자 매매기준율), 원 미만 버림
합 계	644,600,000원
2,423,131,278원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함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와 구체적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억 2,000만원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A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9.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3,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억 2,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C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정상적인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 및 을1 내지 을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대표로 있는 J이 피고가 대표로 있는 AG유한공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2016.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준 점, ②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각서에 C이 회사 부도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C을 상대로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16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④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물품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자금능력이나 신용상태 등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채무인수로 그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결국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다만,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등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공제한 잔액(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A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0. 1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억 1,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본다.

한편 사해행위 후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억 2,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9,400만 원(= 6억 1,400만 원 - 4억 2,000만 원)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넉넉히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9,4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억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이근수

판사박남천

별지

1) = 757,096.04달러 × 1120.5원(2017. 9. 1.자 매매기준율), 원 미만 버림